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

2026. 9. 8.
행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. 8. 21. 차해영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4.

다. 상정일자: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(2026. 9. 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차해영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-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는 국내외 다수의 참가자와 방문객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, 행사 기간 중 안전 관리, 교통, 보건·위생, 환경정비, 관광안내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.
- 마포구는 서울월드컵경기장과 홍대 관광특구 등 대규모 인원의 집결과 이동이 예상되는 주요 문화·관광 거점을 보유하고 있어, 세계청년대회 개최에 따른 인파관리와 교통혼잡 대응, 참가자 편의 제공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관내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

수립, 공공시설 이용 지원, 안전·교통·환경·관광 분야의 지원사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, 마포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문화교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세계청년대회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.
-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적용관계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안전관리, 교통·숙박·급식·의료·관광·위생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공공시설 제공, 안전관리, 환경정비, 참가자 편의, 자원봉사, 국제문화교류, 관광 및 지역상권 홍보, 구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등의 지원사업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6조).
-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,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.
-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(부칙 제2조).

다. 참고사항

- 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입법예고 : 2026. 8. 24. ~ 8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① 조례의 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차해영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, 이를 마포구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특히 대규모 국내외 참가자가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·교통·숙박·급식·의료·관광·위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.

② 주요 제정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-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 이를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,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역량 강화와 연계하도록 제정 목적과 세계청년대회의 정의를 규정함.
-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~제4조)
 - 구청장이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가·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도록 하며,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적용 관계를 규정함.
- 지원계획 수립(안 제5조)
 -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, 교통·숙박·급식·의료·관광·위생,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-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(안 제6조)
 - 구 소관 공공시설 제공, 인파 및 재난안전 관리, 환경정비, 교통·숙박·급식 지원, 자원봉사, 국제문화교류, 관광자원 및 지역상권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- 중앙행정기관,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, 경찰서,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(안 제8조)

- 세계청년대회를 마포구 관광산업과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연계하도록 구청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.

③ 법적 타당성 검토

- 본 조례안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포구가 보유한 공공시설, 관광·문화자원 및 행정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·관광·문화·안전 등 자치사무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.
- 특히 서울특별시가 이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안전·교통·숙박·관광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마포구 차원의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성도 인정됨.
- 서울시교육청 역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시설을 숙박·급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·자치구·관계기관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향후 참가자 숙박 및 편의시설 확보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세계청년대회는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, 다수의 국내외 방문객 유입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관광·상권 연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④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마포구의 관광자원을 지역별 특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할 경우, 홍대·상암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관광객을 망원·합정·서교·연남·공덕 등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관광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음.

- 또한 전통시장, 골목상권, 문화·예술시설 및 지역축제와 관광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궁극적으로는 마포를 단순히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족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5 조문별 검토 및 유의사항

- **안 제6조제3항의 공공시설 사용료 또는 대관료 감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**
 - 각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해당 시설의 설치·운영 조례 및 공유재산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감면 근거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, 본 조례만으로 일괄적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석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- **재정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.**
 - 안 제6조제2항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포괄적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별 필요성, 산출근거,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임.
- **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**
 - 마포구는 홍대·합정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주요 관광·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행사 참가자 증가 시 인파관리, 교통, 응급의료, 위생 등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 따라서 지원계획 수립 시 경찰·소방·의료기관 등과 기관별 역할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.

6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,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 유입을 마포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한시적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특히 안전·교통·숙박·의료·환경정비 등 대규모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, 마포구의 관광자원과 지역상권을 연계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세계청년대회가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국제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은 종교활동 자체보다는 안전관리·관광·문화교류·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영역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시설 관련 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하고,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6. 10. 29.] [법률 제21587호, 2026. 4. 28., 제정]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,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.

제6조(국제문화행사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연장,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
2. 교통·통신·전력·용수·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
3.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
4.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·보수
5. 치안·소방·재난안전·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
6.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
7.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

②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민간 참여 활성화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